

제369회국회  
(임시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7월9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경찰청 소관
  - 다. 소방청 소관

### 상정된 안건

- |                             |   |
|-----------------------------|---|
| 1.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 | 2 |
|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2 |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
| 나. 경찰청 소관                   |   |
| 다. 소방청 소관                   |   |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전혜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행안위에 당면해 있는 민생입법 처리 등이 정기국회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수렴하여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사보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니다.

유민봉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성태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의 보임을 환영하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잘 모시고 우리 행안위가 여야가 없이 서로 친밀하게 또 대한민국의 치안·안전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으면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진영 장관님과 민갑룡 청장님 또 소방청장님 다 함께 우리 위원회 잘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혜숙** 저도 든든합니다. 위원장이 새내기라서 떨리는데 새내기 위원이 오셔서 든든합니다, 특히 중진이라서.

다음은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임명되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위원장 전해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장과 3당 간사 위원 간 합의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님을,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님을 각각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 위원 개선과 관련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다음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이채익 법안소위 위원장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전해숙 위원장님을 모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가 시작되는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까지 법안소위를 이끌어 주신 홍익표 위원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법안소위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밀린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가능한 한 여야 간에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해서 또한 무쟁점 법안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속도를 줌 내서,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켜서 법안소위가 어느 상임위보다도 앞선 모범적인 그런 소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혜와 또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간곡히 청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익표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 홍익표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위원장으로 보임해 오신 전해숙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가 큼니다. 또한 아울러서 김성

태 전 원내대표께서 행정안전위에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중진으로서 많은 역할을 제가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이채익 예결소위원장께서 잘 이끌어 오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추경 심사 그리고 정기국회 때 본예산 심사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꼼꼼하게 예산과 관련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경찰청 소관**

**다. 소방청 소관**

(10시10분)

○위원장 전해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미세먼지 저감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설명입니다. 강원 산불 특별재난지역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긴급지원, 저소득 및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추가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차량 교체, 고시원 등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의 추경사업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경안 개요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존경하는 전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행정안전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강원 산불 특별재난지역 및 고

용·산업위기지역의 긴급지원과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5조 9070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55조 6817억 원 대비 225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특별재난·고용위기지역에 희망근로지원사업 1011억 원, 포항 지진피해 지원 등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업 512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7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숙** 다음은 경찰청장님 나오셔서 경찰청 소관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민갑룡** 존경하는 전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 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차량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으로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10조 9857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찰버스 공회전 방지를 위한 전기공급시설 및 경찰버스 무시동 냉·난방장치 설치 확대에 62억 원, 환경부 배출가스 기준 5등급 경유차 교체에 38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소방청 소관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정문호** 존경하는 전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소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소방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은 정부 추경예산안 편성 방침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원 산불을 계기로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신속한 현장대응에 우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개 사업 118억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화재안전 취약계층의 실제 주거지로 활용되는 1326개소의 노후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 71억 원을 지원하고 대형재난 발생 시 중앙부처 및 대응기관 총괄 지원을 위한 현장지휘소와 소방청 신속기동팀 운영비 1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현장에서 장시간 대응이 필요한 출동대원들의 피로회복 및 급식지원차량 보급을 위해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정책대안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청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을 위해 총 6조 70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은 2253억 원으로 일반회계 3개 사업에 1988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에 26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개별 사업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일 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와 주거·복지·공동체 등 통합형 지원을 통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47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증액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6개월간 사업을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행정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안 중 2개월분인 82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고용·산업위기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맞춤형 공공일 자리를 공급하여 실직자, 이재민, 산불 피해 주민 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1011억 2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난 복구를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공공시설물 개·보수, 인프라 개선 등 주민생활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지연에 따라 2개월분의 추가경정예산안 337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19년도 사업 물량 중 79개소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729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대상 지구 중 36개소가 2019년도 신규 사업지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을 위하여 지구별 예산의 실집행률과 전체적인 공사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 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65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공공근로사업과는 달리 지속적·생산적 일 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비교적 단순한 일 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간개선형의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지연에

따라 예산안 중 66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희 전문위원입니다.

경찰청·소방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인 10조 9757억 원 대비 100억 원이 증액된 10조 9857억 원으로서 경력버스 전기공급시설 및 무시동 냉·난방장비 설치 62억 원, 노후 경유차량 교체 3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력버스 전기공급시설 사업에 대하여는 경력버스 공회전 방지를 위한 전기공급시설 및 무시동 냉·난방장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6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해당 사업은 경비 수요, 비용 효율성, 관련기관 협의 경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지방경찰청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소방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면 소방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인 2197억 2000만 원 대비 11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314억 9200만 원으로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기초 소방시설 설치지원 70억 7200만 원,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출동차량 구매를 위한 14억 6000만 원, 재난 현장 회복차량 및 급식차량 구매사업 3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은 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된 고시원,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일부를 국비 지원하려는 것으로

화재취약시설의 화재대응 역량 강화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 설치업소와 미설치 지원대상 업소 간의 형평성 문제와 화재안전 강화라는 공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 회복차량·급식차량 구매사업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중앙특수구조대의 현장출동 인력에 대한 안정적 휴식 공간 제공 및 급식차량 확보를 위해 재난현장 회복차량 6대 및 급식차량 2대를 구매하려는 사업이며 소방기능 전체의 출동대원 피로회복 및 급식지원 인프라가 미흡한 점과 출동횟수 및 출동인원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이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해숙 토론은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오늘 본회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해숙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의사진행발언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 전해숙 의사진행발언 나중에 듣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 권한과 관련된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저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전해숙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권은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대체토론 전에……

○위원장 전해숙 오늘 이채익 위원님한테도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황에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나중에 듣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은희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중복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권한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하겠다라는 건데……

○위원장 전해숙 그것 나중에 듣겠다고요.

○권은희 위원 왜 나중에 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전해숙 내일도 우리 위원장과 간사단 회의도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세요.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 목전에 다가온 제천화재평가소위와 관련된 위원장님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의사진행입니다.

○위원장 전해숙 권미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

○소병훈 위원 오늘 질의 다 하지 못하지요? 본회의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할 수 없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해숙 예, 5분씩.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

○소병훈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 때문에 전부 다 질의를 못하는데……

○위원장 전해숙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위원장 의견을 따르세요.

○권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빨리 질의하세요.

○권미혁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니까?

○위원장 전해숙 질의하라고요.

○권미혁 위원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권미혁 위원 질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전해숙 질의하세요.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

○권미혁 위원 청년 취업 상황이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 제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의 경험 자체를 제공하는 게 청년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사업성과가 지금 민간취업연계형 지원 종료 청년 가운데 민간으로 취업 연계된 게 몇 %나 되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12월 말 작년에 지원이 종료된 청년 한 40% 가운데 42.6%가 민간취업에 연계돼서 사업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면 꽤 높은 편이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지역주도형……

○**권미혁 위원** 청년일자리사업 한 분들 중에서 강원도 강릉에서 참여했던 참여자가 자기가 벗어나기 급급했던 고향 강릉에 애정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분명히 수도권에 물리는 청년들을 그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수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되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작년에 청년일자리사업 분석한 결과 주민등록지 이전 청년 713명 가운데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수가 195명이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수는 18명이라서 10배 이상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청년의 수가 높았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런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약간 상향식이나 분권형으로 특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그래서 저희는 유형별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여건에 따라서 사업기간 또 근로시간, 사업내용 등 모든 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 지자체가 보다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도 지자체의 의견을 다 들어서 수렴해서 제출한 추경입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지역맞춤형 사업이면 아무래도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 체계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하시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게끔 이 부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여자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은 있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저희가 일 경험과 관계 없는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불합리한 처우 등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장 관리감독 규정을 강화했고 또 참여자 의견수렴 창구를 홈페이지로 개설해서 참여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현장점검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미혁 위원** 꼼꼼한 모니터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붉은 수돗물 문제도 있고 또 추경에 취업난, 밤길 안전, 화재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국민 삶하고 직결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점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권미혁 위원** 제가 보니까 환경이나 일자리 안전에 대해서 국민 수요에 좀 더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조사나 데이터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광역단위에서는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초단위에서는 이런 관련 조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개발에 기초단위의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미세먼지나 청년일자리 문제도 당해 연도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관련 기초조사나 데이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저희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조사나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심의 해 보면 잘못하면 이게 별 소득이 없이 예산만 쓰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소홀히 하는 경향은 있는데 대신 제대로 하게 해 주려면, 예산을 올리는 만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지 않고 중간에 그것을 깎아 버리면 사실 제대로 된 데이터는 안 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꼼꼼히 따져 봐서 이런 것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권미혁 위원** 그리고 소방청장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화재예방시설 설치하시는 것이지요?

○**소방청장 정문호** 예, 그렇습니다.

○**권미혁 위원** 추경안대로 하면 언제 마무리되나요?

○**소방청장 정문호** 추경안이 반영되면 각 시도에 예산이 지원돼서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올해 것은 최대한도로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잘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 위원** 경찰청장님 질문드릴게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윤재옥 위원** PPT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윤지오 신변보호 신청서 내용입니다. 내용을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성 하나만 딱 썼어요, 신청 사유라든지 입증자료는 차치하고라도. 이게 지금 돈이 927만 4000원 숙소비가 지원이 됐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심사를 제대로 하셨나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해당 서에서 신변보호 요청이 검찰에서……

○**윤재옥 위원** 청장님 있잖아요 신청서도 부실이고, 부실이 아니라 신청서도 아니지요. 그리고 심사절차가 있어요.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대로 안 됐어요, 무슨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음, 의결서 한번 보세요. 의결서에도 숙소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는데 나중에 통보하는 공문에 보면 본인이 요청하면 임시숙소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급조한 듯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이 돈이 어디에서 집행이 됐나요?

○**경찰청장 민갑룡**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배분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청장님, 이 건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지금 고발되셨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윤재옥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이라는 게 이런 데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에요. 이 예산은 정말 범죄피해를 당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든 돈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차라든지 돈 집행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 다소 미흡함은 있습니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상 그 부분에 관련된 증인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하였고 저희가……

○**윤재옥 위원** 청장님,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심사를 엄정하게 해서 또 돈도 기준이나 단가 또 기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봐야지 경호원까지 숙소를 제공하고…… 고급호텔을 이렇게 40일간 927만 4000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한 개인을 위해서 집행한 사례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라고 준 돈이 아니에요. 물론 검찰에서 신변보호 요청 협조공문이 와서 그 공문을 근거로 예산을 지원했다고는 하지만 이 기금의 성격이 그렇게 쓰라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심사절차라든지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 민갑룡** 관련된 근거법령들이 다소 모호한 점은 있습니다만 시행령상에도 근거가 있다고 해서……

○**윤재옥 위원** 지원한 돈을 회수할 생각은 있나요?

○**경찰청장 민갑룡** 거기에 관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법무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옥 위원** 그리고 지금 국민적 공분을 가져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 돈 쓰라고 준 돈이 아니라는 국민적 공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경찰이 열심히 일하고도 신뢰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민의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일을 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생각에 맞춰서 해야지요. 돈을 이렇게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최근에 고속도로 점거됐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윤재옥 위원** 제 기억으로는,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점거된 사례가 제 기억에는 거의 안 나요. 왜 이렇게 범집행이…… 지금 현장에서 범질서가 안 지켜지는 겁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당시에 저희도 상당한 수준의 경력을 배치했습니다마는 여성인데다가 또 그

공간이 톨게이트라서 굉장히 광대하게 넓습니다.

○**윤재옥 위원** 어쨌든 지금 민주노총의 각종 불법집회가 만연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런 식으로 법집행하고 대응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고속도로나 국도가 점거되면 경찰서장이 다 직위해제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 직위해제 문제도 우리가 법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개인비리가 아닌 사건 관련 당사자들에게 비정하게 하는 것이 과연 조직 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저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찰청장 민갑룡**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고속도로 등 점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해 가지고 보다 더 철저하게 현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 민주노총 등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저희가 엄정하게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계속 수사하고 또 사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당부하신 직위해제와 관련해서는 대상자들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고 또 법령상 직위해제에 해당되고 또한 과거에 이런 사례들에 있어서 특히 고위직일수록 엄격하게 직위해제 등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직위해제 조치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혜숙**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살핀 바가 있지만 지금 질의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아서 서면질의로 일부 대체하면서 현안질의 꼭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현안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경찰청장님,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결국은 7월 말 보고대회를 끝으로 백서 발간 등과 함께 공식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8대 사건이 경찰의 명백한 인권침해사건임을 조사 결과로 알게 되었고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경우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경찰의 과잉 진압과 물대포 살수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수술

과정에서도 경찰이 개입한 사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사과도 했고 책임자 처벌도 다 이루어졌는데 왜 갑자기 백남기 농민 사건을 이야기하나 싶으실 겁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의원실이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집회의 20명 중 8명이 심사를 거쳐 승진을 했고 그중에는 서린교차로에서 살수 무전지시에 관여했던 허 모 경감이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 기여의 공으로 두 번이나 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관련한 집회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러 목소리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표창도 문제겠지만 저는 허 모 경감을 처음 들어 봅니다. 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서린교차로 4차 살수의 직접 지휘자였습니다. 그간 어디에도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진상조사위의 조사를 통해서 지휘자로 지목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가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경찰 자체감찰이 있었는데 무전지휘 기록과 CCTV 장면을 대조해 가면서 보는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당시에 허 경감은 ‘내가 차벽 위에 있었는지 밑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해서 책임회피 진술을 했는데 단순히 그것을 근거로 조사에서는 지휘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의 조사관이 사전 확보한 CCTV를 바탕으로 해서 ‘당신이 차벽 아래에 무전지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추궁하자 처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이 사건에 관해서는 감찰을 두 번 벌였는데요. 2015년 경찰청 진상조사단 그리고 2017년 검찰의 수사 발표 이후에 감찰담당관실에서 했었습니다. 첫 번째 조사단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청장이 조사단장을 맡았는데요. 사실은 본인이 백남기 사망사건의 책임자입니다. 부실조사가 예정된 구조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고요. 두 번째 감찰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라서 허 경감의 역할이 간접적으로는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백남기 농민 사망의 책임 있는 추가 혐의자로서 검찰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찰 결과는 형사재판 진행 중이라고 해서 재



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하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 모 경감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2018년 3월 30일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살수 지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을 보시면 “7시, 증인이 충남 살수차 수미 9호에 ‘계속 썩요. 아끼지 말고 쏘세요’라며 살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무전 보고를 보고 제가 무전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 결과에 따르면 7시 살수 지시에 따른 살수가 충남 살수차의 네 번째 살수에 해당하고 그 살수에 피해자가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검찰 조사했을 때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입니다.

물대포를 백남기 농민이 맞던 순간에 신윤균 씨와 마찬가지로 무전지휘한 사실 확인되고요. 잘 보이던 위치인 경찰 차벽 아래에 지휘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때까지 백남기 농민 청문회나 국감에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검찰 수사까지 어떻게 피해갈 수 있었는지…… 지휘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신윤균 총경은 벌금형 그리고 한 모 경장, 최 모 경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는데요.

○**위원장 전혜숙** 1분 더 주세요.

○**이재정 위원** 어떻게 검찰 수사는 피하고 집회·시위 관리 유공 표창도 두 번씩이나 받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충남지방청 소속이던 분이 지금은 서울지방청에서 수사 파트에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좀 교정하고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청 차원에서 엄정히 조사하고 또 표창 취소 여부 마땅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유족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노력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책임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연달은 실수가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 분명히 되짚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경찰청장 민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수사 과정, 재판 과정 또 진상조사위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진 사안으로서 저희 진상조사위 권고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조치를 지금 저희가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의사진행발언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진행하세요.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이 용납을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혜숙** 회의 진행은 위원장의 소관이니까 그냥 본질의를 하세요.

○**권은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양해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용납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혜숙** 말꼬리 잡지 말고 그냥 질의하세요.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의 그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위원장님, 제천화재평가소위 관련해서 소위 위원장이 보낸 보고서를 누락시켜서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소위의 활동 방식과 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일정과 보고대상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합의가 되었고 보고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겠다고 했고 이후에 위원님들의 보고자 명단을 받아서 이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는 이후에 제출된 자료를 보고 이 보고대상자 중에서 누구를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자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무단으로 보고자를 누락하시는 권한남용행위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제가 물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위원회는 합의에 의해

서 운영된다. 합의를 해 와라.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합의를 강조하시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합의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 사안, 시급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사안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소방의 국가직화 법안과 경찰과 소방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법안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안전들에 대해서 지금 안전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된 상황인데요. 그러면 위원장님의 그 위원회 운영 원칙에 따른다면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전혜숙** 지금 권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 상임위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권은희 위원** 아니, 오셔서 소위의……

**○위원장 전혜숙** 어떻게 결정됐느냐를 행정실장과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여쭙봤더니……

**○권은희 위원** 제가 어떻게 결정됐느냐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렸고……

**○위원장 전혜숙** 결정된 것만 결재를 하라고 해서……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이 평가소위 위원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원장 전혜숙** 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것 아닙니다.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 독단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는 책임……

**○위원장 전혜숙** 아니, 저한테 질문을 하셔 놓고 왜 제 답변을 막고 그러세요?

**○권은희 위원** 책임을 지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전혜숙**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보세요. 저는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결재한 것뿐입니다.

**○권은희 위원**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그런데 결정하고 나니까 제가 위원장도 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문자를 받고 제가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저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정된 내용으로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결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상세한 내용을 통보도 하지 않으면서……

**○권은희 위원** 그 이전에 이미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장님으로 결정되었고 상임위의 위원장님이면 진행되는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고 알고 계셔야죠! 몰랐다고 하시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전혜숙** 제 답변 안 들으시겠어요?

**○권은희 위원** 제천화재평가소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권한을 남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제시하신 원칙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안 주시니 경찰청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제 검찰총장후보자 청문회 보셨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권은희 위원** 논란이 된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검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종결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다는 해당 수사팀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영장의 수차례 기각과 그리고 수사지휘 내용이 제보자와 대질조사를 하라고 하는 등 통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사지휘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은 '검사들이 관여한 증거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장의 의견을 물었고 수사팀장은 '증거는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원인이……

**○위원장 전혜숙** 권은희 위원님, 1분 더 드릴까요?

**○권은희 위원** 1분 주십시오.

**○위원장 전혜숙** 1분 더 쓰세요.

**○권은희 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충분한 수사를 했는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뒤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증거가 없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의 공여자에 대해서 필요한 수사를 충분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영장기각 등 수사에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고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마당에 어떻게 증거는 있

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어떤 상황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그에 대해서는 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증인들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은희 위원**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당시에 도 평가를 했었고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보면서 해당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청장으로서의 당연히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 평가를 못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그 과정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증인들이 사실에 입각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제는 그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또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하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은희 위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검찰의 수사 지휘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못하는 경찰청장이 어떻게 앞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검찰과의 수사 협력 관계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입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이미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인 국회 절차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내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전해숙**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방금 전에 권은희 위원님께서 전해숙 위원장님의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저는 지난번 제천소위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천소위원회 권은희 위원님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난번 제천화재소위 때도 제가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더니 지난번 의결을 하시려고 그랬던 청문회 건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과 단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진행을 하였던 그런 문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또 어저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제천시 소방 업무, 화재 진압, 사후 대처와 관련된 업무보고 참석 대상자 명단을 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모든 여야 위원님들이 보고자를 신청했는데요. 모든 분의 명단을 다 올려놓고, 도지사, 행정부지사, 재난안전실장,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충주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옥천소방서장 정말 모든 분들의 보고자를 다 채택해 놓고 이런 문제도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처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감을 저는 표명합니다. 어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왜 이렇게 추진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 보세요.

국정감사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여야가 증인을 채택하게 되면 여야 간에 증인 채택에 대한 조율도 하고 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천소위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일방적이고 단독적으로 처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날 속기록을 보니까 한 번도 듣지 못한 청문회 건에 대해서 상정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동의 안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속기록의 중간을 보니까요 청문회라는 그 자체 아니면 이런 보고회 자체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와 소병훈 위원님이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권은희 위원님께서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소방 업무 그리고 화재 진압 그리고 사후 대처로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보고자 그리고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위원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라는 위임이라는 얘기를 단 한 번, 한 차례 언급을 하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죽 해 나가세요. 그런데 그 ‘위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았다고 지금 오해, 판단을 잘못하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인 게 어디 있어요?

○**권은희 위원** 답변할 시간을.....

○**김영호 위원** 누가 누구로부터 위임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고자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까?

○권은희 위원 위원님, 시간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 예, 한번 직접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전해숙 시간 좀 잠깐 드리라고요, 위원님 시간으로 드리라고.

○권은희 위원 평가소위 녹취록에 보시면 청문회에서 보고회 형식으로, 그리고 당일 보고자를 정하려는 의결 안건에서 보고자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하셨나요?

○권은희 위원 7일 전인 4일까지……

○김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하셨나요?

○권은희 위원 의견을 받았지 않습니까? 의견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리스트를 정리해서……

○김영호 위원 아니, 소병훈 위원님, 제 의견, 하나도 못 받았어요.

○권은희 위원 아니, 위원님 의견이 요청하는 보고 대상자…… 위원님 보고 대상자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김영호 위원 제가…… 잠깐만요, 말씀하시고요.

○권은희 위원 자료 제출 들어오는 것을 봐서 자료 제출이 충분하다고 하면 보고 대상자에서 우리가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김영호 위원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아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나 제천소위에 대한 위원님들과 단 한 차례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구두로 설명하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는 자료 요청하라는 말씀을 전화 한 통 하셨어요.

○조원진 위원 위원장님, 상임위 운영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끼리 주고받고 그러니까? 소위나 평가위에서 해야 할 문제지.

○위원장 전해숙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끊어서 야지요.

○위원장 전해숙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

리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런 독단적이고 이런 논의 없는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질의 끝났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전해숙 방금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의사진행을 인정 안 하니가 제 시간을 통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조원진 위원 아무튼 상임위 전체회의는, 제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상임위 전체……

○위원장 전해숙 아니, 조원진 위원님,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상임위 전체회의는 위원들 간의 공방이 아니에요.

○위원장 전해숙 제가 정리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소위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행안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 산불 원인, 국과수에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아직도 안 밝혀졌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런데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변전소에 있는 거기서 발화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미 공개가 다 되어 있고 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채익 위원 경찰청장, 답변해 보세요. 전부 다 공개되었어요?

○경찰청장 민갑룡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개 대상이 무엇인지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한전 변전소에서 발화가 되었다는 것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와서 발표가 되었고요. 그 발표를 근거로 해서 경찰에서 정확한 원인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채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제가 국

과수에 요청할 때는 중간 수사 발표다 이렇게 하고 최종적인 발표는 뒤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최종 수사 발표를 듣지 못 했는데 최종 발표가 되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 수사는 아직 최종 발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아니, 국과수 말이예요, 국과수.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과수에서는 어디서 발화가 되었다 하는 것은 발표를 했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게 최종 발표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국과수는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이채익 위원** 최종 발표고 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과수 감정 결과와 경찰의 수사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채익 위원** 그러면 국과수는 최종 발표를 했고 경찰청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예, 아직…… 최종 결과는 지금 아직 안 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이채익 위원** 그러면 최종 발표는 언제 할 거예요?

○**경찰청장 민갑룡** 조만간 마무리를 해서 종합해서 발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러니까 대충 최종적으로 언제쯤 발표할 거예요?

○**경찰청장 민갑룡** 지금 그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한 2~3주 이내에 가능한 정도로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이채익 위원** 2~3주 안에……

○**경찰청장 민갑룡** 예.

○**이채익 위원** 그러면 국과수 최종 발표와 또 경찰청의 최종 발표와는 좀 상이할 수가 있습니까,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전문적인 분야는 저희가 전문적인 감정 결과를 통상 존중을 합니다. 저희는 국과수의 감정뿐만 아니고 거기에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요인들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인과관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까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국과수 결과를 발표하지만 그런 것들을 야기하게 된 또 인적인, 물적인 요소들에 대한 수사까지를 다 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채익 위원** 지금 현재 많은 강원도민들은 도

대체 산불이 언제 났는데 아직도 수사하고 아직도 발표 안 하는 데 대해서 은폐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행안부장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과수는 어디서 발화되었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러면 발화되었는데 이게 과연 누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지, 과실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수사로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산불뿐만 아니라 사건이 그 사이에도 좀 몇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소탱크 폭발이랄까 뭐 다른 이런, 며칠 전에도 붕괴 사고가 났고. 그러면 항상 경찰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원인을 밝혀서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수사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러면 장관님, 만약에 최종 수사 발표에 한전의 부주의에 의해서 강원도 산불이 났다, 그러니까 한전의 귀책사유로 최종 발표가 되면 강원도 산불 피해에 대한 피해 배상 요구를 한전에 정부 차원에서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정부는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미 피해자한테 많은 보상을 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한전의 과실이 이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는지는 그것은 경찰 수사 결과를 또 보고 판단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채익 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그것은 직접 피해 보상이라기보다는 이재민들이 어려우니까 희망근로를 제공한다는지 그런 차원의 문제고요. 피해 배·보상 문제는 이미 정부로서는 일단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채익 위원** 하여튼 강원도 산불 피해에 대한 원인, 귀책사유는 분명히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경찰청장께서 한 2주 안에 최종 발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민갑룡** 예,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경기 남양주를 김한정 위원입니다.

진영 장관님,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세워서 국회로 넘긴 지가 지금 76일째, 4월 25일입니다. 이번 7월 19일 날 6월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인데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에서야 추경을 심사하는데 이 추경 중에 행안위 희망근로사업,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고용·산업 위기에 대한 지원 예산이 1011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이걸 상당히 절박한 예산인데 이게 지금 집행도 안 되고 해서 애가 많이 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회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저희는 5월에 통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

○**김한정 위원** 지금 이 예산은 강원 산불 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이 있고 또 조선산업, 자동차 등 고용위기 지역에 지원을 해야 되는 우리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예산들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특히 산불 지역, 속초 고성 강릉 인제 동해 또 고용위기 지역인 울산 창원 거제 고성 통영 군산 목포 영암 해남, 이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예산이 이렇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가지고 국회가 공전되고 야당은 밖으로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서야 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 지금까지 이 추경 예산을 놓고 총선용 퍼주기다, 낭비성이다, 일자리 통계 늘리려고 억지로 만든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해명·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것은 그전에도 해 왔고요. 금년에도 해 왔고 또 지역에서 굉장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어떤 희망사항을 받아서 아주 어려

운 분 생계형 일자리 제공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집행을 해서 여러 생계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한정 위원**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이게 무슨 낭비성 추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알려 주시기 바라구요.

그러면 왜 예비비를 안 쓰고 추경 올렸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산을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추경을 하는 것이고 추경도 어렵다, 본예산 집행 넣는 것뿐만 아니라 추경도 어려울 때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경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추경으로 하는 게, 국회의 당연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김한정 위원** 예산편성이 어려울 때 예비비를 쓰는 것이고 추경 할 수 있으면 추경을 하는 것이 예산 원칙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지금 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고 낭비성 사업이고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일부 야당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2009년에 총 28조가 넘는 추경을 편성했어요. 그중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만 1조 7000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희망근로사업은 문재인 정부 편성한 희망근로 추경 예산에 비해서 6%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적은 예산이고 아끼고 줄이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을 남긴 예산 아닙니까?

특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 목적이 분명히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갑자기 재난이 닥쳐서 답답해하고 절박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예산들인데 이 예산들에 대해서 추경 집행을 해야 되는 주무 장관으로서 앞으로 야당의 이런 주장, 비판들이 없도록 대책을 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특히 단순 근로사업 양산에 대해

서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은 우리 정부의 절대 사명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김한정 위원** 이번에 재해 또 지역 경제의 위축으로 급하게 편성된 회생용·응급용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이 좋은 토대가 되어서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이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민감룡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베트남에서 온 이주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아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베트남에서도 여러 베트남 현지 언론을 통해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청장님께서 최근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베트남 공안부장관 만나셨지요?

○**경찰청장 민감룡** 예, 어제……

○**김영우 위원** 어제입니까?

○**경찰청장 민감룡** 예.

○**김영우 위원** 공안부장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물론 관심이 많겠지요?

○**경찰청장 민감룡** 예.

○**김영우 위원** 어떤 말씀이 오고 갔습니까?

○**경찰청장 민감룡** 장관 방문 기회에 제가 유감 표시와 함께 철저한 수사 와 피해자 보호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께서도 이런 것들이 양국 관계와 또 양국 경찰의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 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 저희 지역 포천·가평에도 외국에서 와서 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또 결혼을 한 이주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언어 소통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러 측면에서 고통이 심하고 또 학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많이 가요, 문화적인 차이도 너무나 큰데.

그런데 이번 경우도 보면 베트남 여성이 그래

도 정말 얼마나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면 그것을 본인이 촬영을 한 것 아닙니까, 폭행에 대비해서? 그리고 아주 어린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정말 촬영이 안 되었던라면 여러 가지 정확한 증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증언 같은 것을 확보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용케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도 특히 해외에서 이주해 온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위한 시스템이나 매뉴얼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상황입니까, 경찰에서는?

○**경찰청장 민감룡** 가정폭력 또 데이트폭력 등과 관련해서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지금 협업 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해서 피해의 조사 또 그에 따른 철저한 수사 또 보호지원 조치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그것들이 보다 긴밀하게 더 강화되어서 작동되도록 다시 관계부처하고 협업해서 면밀하게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특히 제 말씀은 외국에서 온 분들에 대한 매뉴얼이 있느냐 이거지요. 여러 가지 언어 소통의 문제라든지 증거·증인 확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보통 일반 우리 국민들에 비해서는 훨씬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찰청장 민감룡** 다문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또 저희 경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언어적 지원이라든지 피해의 신고 또 그 조사에 따른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 보겠습니다. 특히 정말 경찰, 우리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 판단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장 민감룡**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진영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경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소위에서 잘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큰 틀에서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처음에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경제정책 담당자들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경기 하방 리스크, 오늘 여기에도 얘기가 나오니까 마는, 이러면서 추경이 안 되면 경제를 살리지 못할 것처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상당 부분이 지금 국가, 나라 빛을 내 가지고 추경안이라고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 행안부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체육관 짓고 박물관 짓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추경 요건에 맞는 건가요, 체육관 짓고 박물관 짓고 이러는 것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저희 국가재정법에 해당하는 추경 요건이 사실은 좀 엄격하지요. 저는 국가재정법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는 추경하고는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데 지금은, 처음에는 하반기에 상당히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고 또 반도체 같은 것도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경제가 예상보다는 좀 어려워질 것 같고 또 취약계층 부분은 여러 가지 이재민이 생겼다는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 지원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가 추경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영우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숙**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 장관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다문화가정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동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다문화가정이면 우리가 그냥 가정폭력의 단계를 넘어서 국가 간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호와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이 경찰청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각 부처 간에 복지부나 여성가족부와 의논해서.....

거기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굉장한 트라우마를 얻을 수가, 어린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제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를 해 주고 다문화가정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논의해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번 사건 그 동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니다. 저희가

다문화사업은, 다문화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또 여러 가지 충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나 여가부에서 많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에 관한 실행을 상당 부분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다문화에 대해 보다 따뜻한 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경찰청에서도 여청과나 이런 쪽에서 다문화가정을 특별히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기구를 한번 만든다거나 이렇게 도와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할 수 없는 폭력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경찰청장 민갑룡**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을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불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다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찰청의 외사 기능에서 그런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실태라든가 또 지원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 저는 예산결산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청장님하고 소방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전에서 공회전 방지 전기공급시설을 받았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이진복 위원**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서른일곱 군데.....

**○이진복 위원** 서른일곱 군데 중에 34개를 받았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그것 무슨 법적 근거로 받았어요?



○**경찰청장 민갑룡** 저희가 협의……

○**이진복 위원** 그 관련 공문 주고받은 것하고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내역 정리해서 주시고요. 법적 근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그 내역도 좀 주십시오.

○**경찰청장 민갑룡** 예.

○**이진복 위원** 이런 전기공급시설, 냉방장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나는 추경의 대상인지 정말 답답한 마음 급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유차를 교체하는 것 이것 전부 본예산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추경에 넣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국가의 예산법을 제대로 준용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난이나 재해·전쟁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의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도 면밀히 들여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소방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시설 설치하는 것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요.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다는 것이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또 슬쩍 추경에다 끼워 넣었어요. 국회가 이렇게 반대를 해 가지고 삭감을 한 내용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가서도 삭감된 내용을 다시 국회에다가 슬쩍 끼워 넣는 것이 예의에 맞아요?

○**소방청장 정문호** 작년 본예산 심의 이후에 국일고시원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진복 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런 것을 그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자기 돈을 들여서 한 건물하고 전액을 지원받아야 될 건물의 기준이 뭐냐, 노후된 것만 가지고 그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자가 부담을 얼마나 하느냐 등등의 논란을 많이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슬쩍 끼워 넣는 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를 정말 무시하는 것 같아서 좀 불쾌하고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기능 강화라고 하는데 이런 것 정말 본예산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회의용 차량을 구입한다고요? 그것 없어서 회의 못하셨던 것은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것을 굳이 추경에 넣은 이것도 맞지 않고요. 재난현장 출동 처우 개선 이것도 본예산 내용에요.

소방청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기재부가 제대로 받아 주지 못해서 추경에 올려라 그러니까 올려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전혀 추경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두 분 각각 한 말씀씩 해 보세요.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소방청장 정문호** 여러 가지 강원도 산불 화재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상황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고요. 그런 것들이, 대형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더 빠르게 준비를 하면 저희들의 안전 대비 태세가 좀 더 완벽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청장 민갑룡** 저희 경찰 전기공급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미세먼지가 거의 재난에 준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와 관련된 경유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찰차가 국민들 눈에 자주 띄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문제적인 상징적인 그런 요인으로 지적을 받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이것을 빨리 시급하게 개선을 하라는 요구를 크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국민들께서 상징으로……

○**이진복 위원**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말을 해야 되는데요. 어느 국민들이 그런 청원을 어디에 어떻게 넣었는지 근거를 저희한테 내 보세요, 그러면.

○**경찰청장 민갑룡** 아니, 청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여론으로써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진복 위원**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추경의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와서 돈 달라 그런다 해 가지고 국회가 막 생각 없이 동의해 주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다시 환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해숙** 시간 더 드릴까요?

○**이진복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 먼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추경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빚내서 하는 부채추경, 적자추경이라는 거지요. 지금 6조 7000억 중에 3조 6000억이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가 채무관리나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 우려가 높지요.

두 번째는 이번 추경은 정부가 면밀한 준비 없이 급조해서 내놓은 추경이다, 왜 그런가 하면 6조 7000억 중에 63%가 현 정부 추경 때마다 나온 재탕 삼탕 사업입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추경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다시피 법적 근거나 근거 법령도 없이 그냥 내놓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안을 제출해 놓고 문제 지적이 있으니까 부랴부랴 근거 법령을 보완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행안부장관님, 지금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 아주 다양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금 현재 집행률이 4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에 지역기업 연계형은 비중이 6% 수준인데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만 재취업률이 3% 수준밖에 안 되고 있어요. 희망근로지원 사업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을 또 올려놓고 또 요구한 겁니다. 이런 각종 공공근로일자리 사업 정부가 2년 동안 추경 51조 해 가지고 일자리 늘린다고 했지만 공공일자리 제대로 되었는지 종합적인 평가라도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평가도 하고 감사기관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계속 재탕 삼탕 정부는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소방청장님, 앞에서 다른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간이스프링클러 사업 이것 근거 법령도 마련되지 않고 또 지원 조건도 지금 서울시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건이 소방청 조건보다 오히려 더 좋아요. 서울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소방청이 제시하는 조건보다 더 좋으면 국민들이 소방청 사업을 선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검토도 없이 무조건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거 법령도 없고.

○**소방청장 정문호** 서울시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3년간 임차료를 동결하라는 요건이라서요.

○**박완수 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경찰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무시동 냉방장치하고 전기공급시설 설치 사업 100억 원인데요.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급성이 추경 사업으로서 적당하지 않고 또 정부가 이번 예산을 내놓을 때 미세먼지 대책 예산이라고 추경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찰청에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찰청이 금년도에도 버스 49대를 구입하면서 CNG차량이나 다른 친환경 차량을 구입한 게 아니고 전부 경유차를 구입했습니다. 경유차는 CNG차량의 30배가 넘는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버스거든요. 물론 경찰청에서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막았을 때 폭발 가능성이 있다든지 가격이 비싸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무시동 냉방장치, 전기공급시설 설치하는 데 예산을 들일 게 아니고 예산이 좀 더 든다 해도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기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되는 것이지 정부의 의지하고는 따로 가는 경찰청의 예산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민갑룡** 예.

○**박완수 위원** 그리고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 때 전임 장관님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 창원시 같은 경우에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시한이 내년까지입니다. 이것 연장해야 된다고 지역에서 요구가 있는데 장관님 입장이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소방청장님,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소방청 특히 창원시 소방본부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소방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검토나 개선을 할 의지가 전혀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청장 정문호**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완수 위원** 예.

○**소방청장 정문호** 우선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률이 없다고 하셨는데 다중이용업소법 제3조에 ‘국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현재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 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완수 위원** 아니지요, 조금 전에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보완할 법률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무슨 법률이……

○**소방청장 정문호** 예,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2010년 포항요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요양원 간이스프링클러 이용 21억을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다중이용업소에 앞으로 무한정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이 지금 제안이 돼 있고 심의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청장 정문호** 다중이용업소 중에서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오늘도 화재에 취약한 장소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위한 것인 만큼 시급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완수 위원** 민간 부문의 모든 취약 부문을 정부 예산으로 다 해결할 겁니까, 근거도 없이?

○**소방청장 정문호** 다중이용업소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취약계층의 주거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만……

○**이진복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조산소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소방청장 정문호** 예, 산후조리원.

○**이진복 위원** 조산소를 처음 허가할 적에 그런 조건 없이 허가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소방청장 정문호** 그것은 사후에 법이 개정돼서 강화된 경우에만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아니, 소위에서 따지겠지만 박완

수 위원 말씀하시는데 답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전혜숙** 질의한 위원 외에는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정문호** 두 번째, 창원 소속 말씀하셨는데요 창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소방체제는 광역 소방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근본을 흔드는 문제고 또 창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100만 이상 시도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박완수 위원** 아니, 창원은 특별법에 의해서…… 자꾸 법을 무시하는 소방청장의 발언은, 계속 앵무새같이 답변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소방청장 정문호** 그래서 이것은 좀……

○**박완수 위원** 법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다른 100만 이상 도시하고 법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소방본부를 왜 같이 보는 거예요?

○**소방청장 정문호** 그래서 지금 창원과 경남 인사교류가 안 돼서 경남직원들은 아주 또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요.

○**박완수 위원**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소방청장 정문호**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차원이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다음 답변하세요.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의 노후 차량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그런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수소차, 수소 경찰버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노후 경유차가 국제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서울시 등에서는 그런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들은 시내를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경찰 차량들을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추경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구입할 차량은 그런 환경 기준에 부합하고 또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차량 구입으로 계속 전환해 가겠습니다.

.....

○**위원장 전혜숙**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仁和 위원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장관님하고 경찰청장님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의 다문화가정 폭행사건 이것이 지금 폭행 대상자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촬영을 해서 공개를 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공개를 안 했다면 문힐 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병산의 일각 일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얘기를 들었을 때 수많은 다문화가정 부녀들이 폭행을 당하고 참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실태를 그냥 방치하고 간다는 것은 나라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이나 청장님이나 그다음에 여가부나 이런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폭력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폭력이 행사됐을 때 국가가 어떻게 관여해서 이것을 막을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것을 행안위에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鄭仁和 위원 청장님, 아셨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알겠습니다.

○鄭仁和 위원 그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鄭仁和 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鄭仁和 위원 이것이 2019년 본예산에서 600억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잘 모르겠습니다.

○鄭仁和 위원 그 감액 사유가 무엇이었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鄭仁和 위원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청 같은 타 부처와의 사업 중복 가능성과 그다음에 사업 성과를 평가한 후에 편성을 하자’ 이것이 삭감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지역정착

지원형사업에서 일단 외부 청년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사업이 지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옛날 KBS 보도된 것 보셨지요? ‘민중의소리’ 보셨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취업연계형사업에서는 채용된 청년이 본업에 종사한 게 아니라 회사의 들러리,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략이 되고 그 사람들이 홍보에 동원된다든지 이런 본업과는 상관이 없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성과분석·정책분석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비를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소위에서 심의할 때 충분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행정안전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예결위나 본회의에 가서도 절대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仁和 위원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민갑룡 예.

○鄭仁和 위원 지금 경찰 경비경력 냉방장치를 위한 전기공급사업 있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鄭仁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기하고 있는 경비경력들에게 어쨌든 냉난방 장치는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니까 그런 필요성에서 본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겠으나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지금 37개소가 기존에 돼 있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鄭仁和 위원 이 37개소는 언제 어떻게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최근 한 2~3년간에 한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전기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鄭仁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경찰청의 필요에 의해서 본예산에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경찰청장 민갑룡 예.

○鄭仁和 위원 그런데 이번에 37개소의 약 세 배에 달하는 108개소를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 올렸잖아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鄭仁和 위원 그런데 설치 장소나 선정 기준이나 설치비용, 공사기간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과연 추경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설치하면 이전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비용도 보니까 1000만 원에서 1억 넘게까지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사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볼 때 집행률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8개소가 설치되면 도로점용이나 그다음에 굴착허가나 업체선정, 공사진행 이런 여러 가지 제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사업안에 부실은 없는 것인지, 선정 장소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소위 때 역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 민갑룡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들을 잘 준비를 해서 소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仁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해숙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계속 나왔던 얘기에요. 경찰버스가 시위 진압을 하러 가서 혹은 시위 대기하고 있을 때 차량들이 쭉 서 있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김민기 위원 그때 냉방 혹은 난방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계속 시동을 켜 놓는 행위가 있게 되고 그것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오염을 일으켰다, 그래서 시동을 끄고도 냉방 혹은

난방이 되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본질이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래서 전기공급장치가 필요한데 전기공급장치는 시위가 많이 예견되는 곳에 우선 설치가 되겠네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것이 기준에 37개소가 돼 있다는 것이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김민기 위원 그리고 이번에 108개소가 된다는 것이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김민기 위원 그리고 차량도 전기를 갖고 냉난방 할 수 있는 예산도 12억이 편성됐다는 것이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후화된 경유 차량을 교체하는 비용도 한 37억 편성됐다는 얘기이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지금 108개소는 시위의 빈도를 갖고 추정을 한 곳입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예,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정 횟수 이상 시위가 계속 발생하는 곳들을, 다발 지역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면 완벽한 겁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저희로 봐서는 지금 거의 장기간 또 시위가 자주 빈발하는 그런, 특히나 또 사람들이…… 그런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입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 필요한 곳은 여기면 다 되느냐 이런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위도 흐름이 있어요. 이곳에서 하다 이곳이 시위가 딱 끊기고 다른 곳에서 또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전기공급장치를 그쪽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김민기 위원 그러면 전기공급장치가 늘어나는 거고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김민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모든 게 해

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청장 민갑룡**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현재 선정된 장소는 어떤 집회 시위든지 간에 통상적으로 거쳐 가는 곳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어떤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하는 곳이 아니고 가령 도청 앞이라든가 이런 데서……

○**김민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고……

○**경찰청장 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기본적으로 많은 곳은 더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그렇지만 기본적이 아닌 곳은,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또 추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가령 장기간 어떤 갈등 현장이나 이런 곳들은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면 된다?

○**경찰청장 민갑룡** 현재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위현장을 나가 볼 때도 많은 버스에서 시동을 켜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산을 지금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찰청장 민갑룡** 예.

○**김민기 위원** 다음,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지진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김민기 위원** 지금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김민기 위원** 그런데 아직도 텐트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게 잘, 물론 정부나 지자체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국격의 상황에서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저도 어쨌든 해결해야 되겠다, 가서도 느꼈고 그 이후에도 포항시장과 통화도 하고 여러 번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달 27일 날 1심 판결이, 진즉 나가기로 했다가 여기 있는 분들이—한미장관맨션에

사시는 분들이—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쨌든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주민들이 패소했지요. 패소했기 때문에 이제는 패소와 상관없이 주민들이 임시 거처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기시고 임대주택으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기시고 장기적으로 재건축하는 데도 충분히 정부가 도와주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어쨌든 1심 판결은 났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민 입장에서는 또다시 생각해 봐야 할 기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속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곧 포항시장님과도 다시 한 번 더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장관님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어제 베트남 공안부장관 만나셨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김민기 위원** 좀 죄송스러웠겠습니다.

○**경찰청장 민갑룡** 예, 조금……

○**김민기 위원** 그래서 강한 수사 의지를 밝히셨고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김민기 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강한 수사 의지를 밝히시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말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행위가 필요할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지자체와 아마 노력하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과 또 하나는 선언적 의미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결책도 있습니다. 그것 좀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하고요. 우선 다문화가정의 언어상의 문제랄까 또 문화상의 차이 이런 게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교육도 잘해야 되고 또 지원도 해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잘 정

착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선에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정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해숙 김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강원 산불 관련 피해구제에 관해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희망근로사업으로서 강원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나 지역주민 생계 안전을 위해서 희망근로에 한 2050명 정도, 지금 6개월.....

○이언주 위원 그것 말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봤어요. 그것 말고 또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그것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언주 위원 강원 산불이 났을 때 정부 관계자들이 다 가서 가지고 피해구제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잖아요.

장관님, 가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이언주 위원 그때 가셨지요.

몇 번 가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한 두 번, 세 번쯤 갔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집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겁니다.

○이언주 위원 그렇지요? 일단 거주할 데가 필요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여름이니까 굉장히 더워서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정부가 다 뭔가 마련해 줄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임시 주거는 대충 다 마련이 됐습니다.

○이언주 위원 아니요, 그것은 임시고 그게 어떻게, 편안하게 자기 집처럼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의 책임이 어느 정

도 추정이 되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말이지요, 장관님께서 어차피 기본적인 책임 그러니까 한전의 책임이 전혀 인정이 안 되기는 어렵단 말이지요.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편. 그러면 어차피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리 말이지요 주거 문제에 대해서라도 먼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의를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전에서도? 나중에 배상책임이 나왔을 때 거기서 공제하면 되잖아요.

장관께서 이 추경 문제를 떠나서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중간에 중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주거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 지원이 됐고요. 지원이 됐고.....

○이언주 위원 아니, 그것은 중국적인 지원이 아니지요, 중국적인 지원이. 그러니까 어차피 정부가 집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한전이 배상을 해야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새로 집을 짓고 할 텐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전 배상과 상관없이 주거에 관해서는.....

○이언주 위원 그러면 정부가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지원이 다 됐다고 보고요.

○이언주 위원 어떤 주거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지금 전파된 경우에는 많이 지원한 액수는 1억 3200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한 것까지 다 합치면.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이언주 위원 그것으로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언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전혀, 아까 그 일자리 이것은 사실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것은 그때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언주 위원 그러면 충분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한전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고성하고 속초에 관한 문제고요.

○이언주 위원 시간이 없어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또 강릉이나 인제는 다른 겁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주로 고성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속초에서. 그래서……

○이언주 위원 고성하고 속초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주민들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시작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한전하고 주민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시작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에 더운데 사실은 집을 당장 자기가 지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 배상 문제가 결론이 내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불편한 게 없는지 장관께서 살펴보고 저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그것은 지자체랑 저희가 충분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민갑룡 예.

○이언주 위원 추경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5월 말에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민노총 시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이언주 위원 거기서 불법행위자 12명을 현행범 체포를 했는데 11명이 1차 조사 그러니까 4시간 후에 바로 석방이 됐어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체포된 상황이 조금, 10여명은 단순한 해산 불이행이고 나머지가……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언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사진을 보세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울산에서 한바탕하고 지나간 흔적입니다.

자, 경찰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안녕……

○이언주 위원 특정집단이나 특정권력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겠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이언주 위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그래서 저희들도 엄정하게 지금 수사를 해서 엄정한 사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이게 말이지요 특수공무집행방해지요,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렇지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황이 특수입니다, 특수. 그래서 굉장히……

○경찰청장 민갑룡 예,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힘없는 국민이 만약에 경찰을 상대로 때로, 집단으로 저런 짓을 했다 그러면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그것은 힘이 있건 없건 간에 법은 공평하게 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국민들이 말이지요 저장면을 보고, 석방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것은…… 그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경찰에서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겁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위원님, 저희는 행위 유형별로 정확하게, 행위자별로 상응하게 지금 사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석방한 것은 경한 사안이고 중한 사안들은 저희가 전부 다 구속영장을 다 신청을……

○이언주 위원 아니,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 4시간 후에 바로, 1차 조사 하고 바로 4시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에 다 석방을 합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거기는 폭력행위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면 저 폭력은 다 누가 했습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폭력행위 한 사람들은 당시에, 그 폭력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법원에 의해서 석방됐



고요. 다른 또……

○이언주 위원 그리고 저런 상황, 아까 머리카락이 잡혀 가지고, 머리카락이인지 뭘지 신체를 잡혀서……

○경찰청장 민갑룡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언주 위원 우리 경찰이 말이지요 저런 폭력적 집단에 의해서 우리 경찰이, 공권력이 저런 취급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왜 경찰청장은 엄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사진으로 제시하신 그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이언주 위원 청장님, 세부적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영장을 신청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장으로서 그런 정도 되면 입장을 발표하셔야 돼요. 이런 사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청장께서 입장을 발표하셔야 돼요. 국민들이 들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분노하는 국민들이 들어야 됩니다.

○경찰청장 민갑룡 제가 언론에 그에 대해서는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행위에 상응하게,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수차례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언주 위원 앞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주 위원 앞으로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예, 위원님 당부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해숙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 행안부장관님, 6월 말까지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시지요? 행안부, 6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상수 위원 우선 평균을 한번 말씀해 보시고.

여기 제가 가진 자료는 한 23%라고 돼 있고

또 지금 추경으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의 몇 %가 집행이 됐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추경 23%로 집행됐다고 들었고요, 제가.

○안상수 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시각에서 짚어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위원장을 했어요. 470조를 통과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강조했던 것이 한 두어 가지 되는데 이 예산이 빨리 집행이 돼서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상반기 중에 한 60%가량은 해야 된다고,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가이드가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 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추경 다 해 봐야 정말 6조 7000억인데 이것을 가지고 얼마 늦은 것에 대해서, 직접 혜택을 받을 분들에게는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은 액수인데……

또 하나는 이것은 직접 관련은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청와대 측에다가 많이 항의를 한 것은 너무 현금 살포성 예산을 하지 말고 인프라를 많이 투자를 해라, R&D 등 소프트웨어, SOC 등 하드웨어 이런 것을 많이 권고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일본에서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핵심 부품을 수출 정지를 함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바로 다 인프라를 투자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관님이 한번, 산전수전 다 겪고 지금도 수석 국무장관인데 이런 부분을 올 예산 책정하기 전에, 본예산 할 때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추경에 대해서 우리가 늦었거나 여러 가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패스트트랙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 국회 역사상 선거법이라는 것은 여야 간에 늘 합의를 존중해서 해 왔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을 숫자와 힘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사실 이것을 하라고 만든 법도 아니에요. 저도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한 60% 가까이가 패스트트랙은 잘못됐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과정이 여야 간에 서로 협의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지금 다시 국회가 열린 게, 어쨌든 합의 등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것이고요.

추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서면으로 했으니까 잘 한번 서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 보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이번에 장관님이, 국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맑은 공기, 맑은 물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안상수 위원 제가 인천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2002년부터 8년간 인천광역시장도 했고 상수도를 직접 관리도 한 사람 입장에서 대단히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환경부장관이나 인천시장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행안부장관도 주무 장관 중의 하나인데 국민들한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국 지자체에도 잘 전파를 해서 이런 수돗물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노후관을 교체하는 겁니다. 상수도본부라는 게 광역단체의 장의 관할로 돼 있어요. 저도 제 밑에 상수도본부를 한 8년 동안 관할을 했었는데 이게 안타까운 것이 땅속에 묻는 예산이니까 이것을 굉장히 꺼려 합니다, 시·도지사들이.

저는 사실 제 자량이 아니라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국민들한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공기도 국가가 책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이게 물론 환경부 소관이기에는 한데, 직접적인 소관은. 그러나 지자체를 다 소관하고 또 국무위원이시니까……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 관로 노후평가를 검사한 것이 2015년에 약 한 8.3%예요, 1만 5000km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작년에 3300이 대상자로 지정돼서 한 3조 1000억 정도가 됐고, 이 중에 1조 8000억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문에 내년에도 한 500조 된다고니까 1년에 한 10억을 그냥 배치하는 겁니다, 10억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10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상수 위원 10억을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예산 당국하고 해서 그래 가지고, 지자체가 예산이

별로 없어요. 원래는 지자체하고 5 대 5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광역단체 그러니까 서울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데 사실 특광역시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이 먹는 수도니까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격적으로 할 것을 대통령께도 건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건의 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어쨌든 재정 당국하고 환경부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해숙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 제가 예산소위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예산 관련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번에 추경도 관련돼 있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재난 지원비 관련해서 지금 피해 규모나 어떤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복구 지원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구 지원비가 그냥 일률적으로, 주택을 예로 들 때 전파일 경우는 얼마, 반파일 경우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그렇게 했습니다.

○홍익표 위원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규정도 오래 됐고, 예를 들면 피해 산정을 해서 피해 규모의 몇 %라든지 이렇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좀 세분해서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홍익표 위원 그렇습니다. 현실화하는 게, 그 규정을.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저는 피해 규모의 몇 %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5000만 원 피해를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물론 한도는 정해야 되겠지요. 최대한도를 얼마로 해서 몇 %까지 한다 이런 정도로 좀 하는 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손해사정을 정확히 하고……

○홍익표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피해 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피해 복구 지원이 아닐까 생각돼요. 지금 이것은 굉장히 행정 편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조금 더 과제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파, 반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약간 현실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요.

○**홍익표 위원**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앞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베트남 이주여성 관련된 폭력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국민적 공분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문제지요. 하나는 이주여성 인권에 관련된 문제고, 두 번째는 가정폭력 문제,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치경찰제가 만약에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자치경찰 사무가 되지 않습니까, 가정폭력 문제요?

○**경찰청장 민갑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같이 하면서 경미한 것은 자치경찰이, 이렇게 중한 것은 국가경찰이 하게 됩니다.

○**홍익표 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가정폭력하고 교통하고 초기단계는 자치경찰이 갔다가 이게 중대범죄로 폭력 정도가 심하거나 상해 정도가 심하면 국가경찰로 이관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그런데 신고 자체가 처음부터 중하게 오면 국가경찰도 나가게 됩니다.

○**홍익표 위원** 출동은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무를 분리할 때……

○**경찰청장 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저는 그래서 평소에도 생각이, 이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기초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경찰이 공유하고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대비하는 방안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해외에 나가 보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책자가 언어별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이주여성들 같은 경우에 주로 중국, 베트남 또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도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한테 주로 필요한, 이주여성들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형사 절차, 예를 들면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

저는 이것은 행안부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경찰 관련된 업무를 이런 다국적 언어로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전용 콜이라든지 신고 콜 같은 것을 안내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행안부도 관련 업무 중에서 이주여성들 대상으로 행정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책자를 다양한 언어로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현장, 자치단체에 배포하거나 자치단체는 이미 다문화가정에 대한 과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책자를 해당 언어로 배포하거나 전달해 주거나 하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거나 안내해 줄 수 있는 노력들을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홍익표 위원** 경찰청장께서도요.

○**경찰청장 민갑룡** 잘 알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리고 특히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여자는 맞아도 된다’든지 이러한 사고가 과거 가부장적 문화에서 잘못된 유산으로 남아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에서의 판단은 이것은 그냥 가정내의 일로 해서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다시 한번 관련된 업무 매뉴얼이나 교육을 경찰청에서 엄격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청장 민갑룡** 위원님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 등을 정비해서 그런 의식을 불식시켜 나가고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청장님,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소방관 국가직화법과 과거사법 등의 안전조정위가 구성됐는데요. 안전조정위원회가 조기에 빨리 구성돼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예.

○**홍익표 위원** 소방관 국가직화 이 법이 빨리

통과돼야 10월부터 시행되겠지요?

○소방청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지금 10월부터 시행될 소방관 국가직화 지연으로 인해서 인건비 지원이 지연돼 가지고 인력 충원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소방청장 정문호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원래 부족 인력 2만 명 신규 채용해야 되는데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예산이 본예산에 1537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교부가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소방청장 정문호 예.

○홍익표 위원 소방관 국가직화가 돼야만 이게 교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2018년에 신규 채용한 5677명 소방관의 인건비 전부를 아직 그것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소방청장 정문호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리고 추가로 올해 5000명의 소방관 채용계획도 국가직화가 늦어지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소방관 스트레스로 인한 소방복합치유센터 있지요?

○소방청장 정문호 예.

○홍익표 위원 이것도 사실은 소방관 국가직화를 전제로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비 지원 사업 아닙니까?

○소방청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래서 저는 소방관 국가직화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소방관의 충원 문제 그다음에 처우 개선과 관련된 특히 소방복합치유센터, 트라우마센터 같은 것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소방관 국가직화를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조기에 통과시켜서 빨리 이것을 법제화해서 10월 1일부터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해숙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직에 치유센터가 없습니까?

○소방청장 정문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없습니

까?

○소방청장 정문호 예, 국가직이 돼야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직을 전제로 지금 현재 예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알겠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자료 신청은 가능합니까?

○위원장 전해숙 예.

○조원진 위원 좀 긴데, 우리 경찰청에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데 안 주는데 장관도 좀 들어 보세요. 자료 좀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조원진 위원 1번, 2017년 3월 10일 탄핵 관련 집회 관련 경찰청의 사전대책회의 자료, 참석자 명단, 사전대책회의 자료.

2번, 3월 10일 관련 경비계획서 사본, 경력 배치, 단계적 차단선 운용, 세부전술 등 포함.

3번, 2017년 3월 10일 탄핵 관련 집회 관련 경비대책회의 자료, 참석자 명단, 경비대책 결과자료.

4, 2017년 3월 10일 탄핵 관련 집회 관련 경찰지휘체계.

4-1, 4번 질문과 관련한 당시 귀청 청장의 일정, 차량 운행 기록, 시간대별 위치.

5, 2017년 3월 10일 탄핵 관련 집회 관련 경력의 동원과 배치 현황—지방청별 부대동원 내역 및 구역별 부대동원 내역.

5-1, 5번 질문과 관련하여 안국역 출구별 경찰 배치 부대 및 지휘자 현황.

5-2, 당시 안국역 출구별로 투명 차단벽 설치한 현황.

5-3, 시민들이 쓰러져 있는데도 차단벽을 열지 않은 이유.

6번, 2017년 3월 10일 탄핵 관련 집회 관련 동원한 각종 차량 및 장비 현황—버스·살수차·방송차·충약차·조명차……

○김한정 위원 문서로 하세요, 문서로. 다른 분들 시간도 좀 생각해서 문서로 하세요.

○조원진 위원 기다리세요.

○위원장 전해숙 계속 자료 요구하세요.

○김한정 위원 취지를 알겠으니 문서로 하세요.

○조원진 위원 자료 요구를 하는데 왜 또 중간

에 끼어 들고 그래요?

○김한정 위원 문서로 하세요.

○조원진 위원 그다음에 6-1, 6번 질문과 관련하여 실제 장비 사용 내역—최루액·죽창 등 사용 규모.

○김한정 위원 문서로 하시라니까 무슨 저……

○조원진 위원 7, 집회·시위 관련한 장비 사용 관련 규칙·지침 등 일체.

○김한정 위원 시간 이거 제한하세요, 위원장님.

○조원진 위원 8, 2017년 3월 10일 탄핵 관련 집회 관련 차벽 설치 현황……

○김한정 위원 질의하시고 문서로 하세요.

○조원진 위원 차량 소속, 동원 부대명, 지휘체계, 소속 지방청. 당초 차벽 설치 계획 대비 실제 배치도, 이와 관련한 그림·도면·사진자료.

9, 2017년 3월 10일 탄핵 관련 집회 관련 차벽 또는 차단선의 소위 숨구멍, 통행로……

○위원장 전해숙 조원진 위원님, 몇 장 됩니까?

○조원진 위원 이것 한 장이요. 한 장 남았어요.

○위원장 전해숙 한 장 남았으면 그것까지 하시고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시고 질의하시지요.

○조원진 위원 관련 근거자료.

그다음에 10, 11, 12, 13, 14, 15는 서면으로 먼저 드렸으니까 보시고요. 나머지 사항 2019년 6월 25일 광화문 광장 텐트 철거 관련해서 당일 기동대 출동 현황 및 24개 중대 중대별 배치 현황, 24개 중대 임무사항, 해당 중대 무전 녹취록,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경찰의 관련 규칙·지침·기준 등 일체.

이 나머지 사항은 서류로 드릴 테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전해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행정대집행의 요건은 행정 목적에 맞아야 되고, 특히 행정대집행은 사람에 대해서 집행하면 안 됩니다. 행정대집행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화면 좀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해숙 질의 다 했어요?

○조원진 위원 화면 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6월 25일 행정대집행 현황입니다. 경찰 2400명, 서울시 공무원 500명, 용역강패 570명, 소방청 100명, 안에는 200명밖에 없었는데 오함마 자루 들고, 오함마 들고, 빠루 들고, 칼 들고,

각목 들고 저렇게 사람들을 내동댕이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게 행정대집행, 10년 이래 한 번도 보지 못한 행정대집행 과정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하면 안 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러싸고 때립니다. 구타하고 둘러싸고, 구타당하는 저 사람 실명 과정에 있어요.

저 안에서 저항하는 모습 보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안에 저항하는 모습. 저렇게 내동댕이치고 던져 버립니다.

저것이 2019년 6월 25일 날 새벽에 일어난 행정대집행 상황입니다. 저게 가능한 겁니까? 장관님, 한번 보세요. 행정대집행법에 위반되는, 분명히 사람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하면 안 된다는 판례와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저것 보세요. 안에 있는 사람들 저항합니까? 저기서 100명이 다치고, 80명이 진단 폐고, 저렇게 사람들…… 저 사람들 용역강패들이에요. 용역강패가 감금시킵니다.

저 안에는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 100명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천막을 부숴 버립니다. 저 천막의 나무에 맞고 부상당한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때 경찰은 뭐 했습니까? 2400명이 둘러싸고 저 폭력현장을 옹호했잖아요. 저분 갈비뼈 네 개 부러졌습니다.

위원장 보십시오. 저게 현장입니다. 저 사람들 문신 다 하고 있는 강패, 조폭들이에요. 온 몸에 다 문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행정대집행법 이번에 정부에……

좀 더 보시지요.

됐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안 정부안 올라와 있지요? 그게 광역단체장들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 가지고 요건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저 행정대집행에 200명을 행정대집행 하는데, 그렇지요? 2400명 경찰이 저 폭력을 에워싸고 옹호하고 있었어요. 소방이 100명 대기하고 있었고, 나머지 서울시 공무원 500명, 용역강패 570명.

그리고 저 용역강패 570명 돈을 지금, 행정대집행 돈을 우리공화당에 내라고 그림니다.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 밝은 대낮에, 새벽에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땅에서? 행정대집행은 절대로 사람 몸에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찰청장님, 저 상황 보고받으셨어요?

경찰청은 저런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이 개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폭행을 말려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대집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못 하게.

저기에서 팔 부러진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80명이 진단서를 땀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에 뭐라고 발표했어요? 박원순 시장, 우리가 폭력했다고? 저기에 폭력 장면 하나라도 있습니까?

쇠 빠루 들고, 오합마 들고 들어오니깐 갖고 있던 생수 물 뿌린 거예요.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서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조사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현재 관련해서 고소와 고발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저는 답답한 게 경찰 2400명에 위쳤을 때는 저런 일이 있으면 경찰이 개입해서 폭력을 못 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 저 당시에 38명이 119에 실려 갔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경찰 개입 안 했잖아요. 그것은 경찰이 폭력을 방조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근래에 저런 행정대집행 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이 저렇게 맞아서 실려 나가는 거 보셨어요? 왜들 이러십니까?

87년 헌법 개정, 제9차 헌법 개정에 의해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광범위하게 보장되어 있고, 정당법에 수도 없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2013년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정당 활동 101일 동안 불법테트 치고 했어요. 그런데 개입했습니까?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때문에 개입 안한 겁니다.

어떻게 서울시조례가 헌법 위고 정당법 위입니까?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폭력을 하고 있는데 경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400명이 방조하고 있었다? 이 또한 경찰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 경찰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발 들어가는 거 아세요? 청장님, 아십니까?

안에서 저런 폭행이 일어나고 저렇게 무자비하게 제 덩치 배 되는 사람들이 아녀자들을 두드려 패고 있는데 경찰은 바깥에서 방조하고 있었던 말이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자료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격적으로 경찰 직무유기로 다 고발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숙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본회의로 인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 본회의는 2시고, 아직 추가질의할 위원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면 합니다.

○위원장 전혜숙 추가질의 간사 간 합의해 오시지요. 오늘 간사님들이 이것으로 하는 것으로……

○권은희 위원 아니요, 추가질의와 관련해 가지고 간사 간의 합의보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의 의사가 더 중요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혜숙 추가질의 간사 간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채익 간사님 어디 가셨나?

○홍익표 위원 1회만 하시지요.

○위원장 전혜숙 그러면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권은희 위원 제천화재 참사 국회 평가소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한 제천화재 피해 유가족들의 의견 일부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이미 평가소위원회에서 소방청 합동조사단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고 하니 그 결과를 기초로 참사 당시 화재 건물의 인허가와 안전관리 등 업무를 책임지셨던 제천시장님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활동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셨던 충북지사님을 통해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는 제천시와 충북도의 현실에 맞는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개선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중앙이든 지방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안전 보장은 국가기관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국가기관의 당연한 책무고 위정자들이 행할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천시장님과 충북지사님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뜻을 모아 출범한 평가소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진솔한 자기반성과 함께 소방합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현실적인 방안을 보고하고 국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천화재 피해 유가족들이 저희 평가소위원회에서 해 주기를 기대하는 역할, 거기에서 보고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제시를 했고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해서 제천화재참사평가소위원회가 필요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보고자 및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의 응답을 검토해서 보고자를 적당한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논의하는 그런 운영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스스로도 아무런 내용을 모르신다, 진행됐던 상황을 모르신다라고 하셨던 위원장님이 도대체 합의를 해 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소위에서 진행되었던 내용과 요구서를 임의로 누락시킨 채로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하실 수가 있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절차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지금 평가소위원회에서 진행되어야 할 임무와 역할과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 있는데 위원장님은 도대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다루라는 취지로 합의를 해 오라는 이유로 그 형식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마음대로 그 운영 방식을 결정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위원장님 향후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실 겁니까? 모든 사안에 있어서 합의를 요구하실 겁니까?

○위원장 전혜숙 조원진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하면서 시간 많이 썼는데 그만하시지요.

○조원진 위원 잠깐만요, 말 자꾸 끊지 마세요. 위원장님은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는 보장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전혜숙 그러면 3분만 하세요.

○조원진 위원 예.

지금 용역업체에 강패조직이 동원됐다고, 저희들이 장부를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청장님, 어제는 부천 강패조직이 또 왔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포스원코리아라는 용역업체가 전국의 지방자치 특히 좌파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철거 부분을 다 하고 있다. 이거 조사하셔야 됩니다. 어제는 부천 강패조직의 부두목격이 와 가지고 텐트를 보고 갔습니다.

자, 만약에 강패조직이 용역업체에 연관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들은 분명히 용역업체 직원이 아닙니다, 강패들이었어요.

우리가 증거자료, 저 장면 다 감추려고 했는데 유튜브가 250만이 보고 있습니다. 여성분이 갈비뼈 네 개 부러지고, 왼쪽 눈 실명, 오른팔 골절, 왼팔 골절. 그리고 수도 없는, 100명이 다치고 80명이 진단서를 끊은 그 사건입니다. 그것도 용역 강패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돈을 1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들인 용역강패에 의해서 국민이 두들겨 맞은 사건이에요. 이거 조사하십시오.

이거 조사하셔야 됩니다. 더 필요한 자료 동영상 50개 갖다 드릴게요. 저희들이 폭력 장면 다 나왔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채증해 가지고 전부 다 고발조치합니다.

제가 그것을 말하려고 들어가는데 11중대 11기 경찰에서 막았어요. 제가 들어갔으면 저렇게 사태가 안 벌어졌어요. 경찰이 왜 막습니까? 경찰이 막으려면 폭력강패들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바로 폭력을 하고 있는 게 경찰 동영상에 다 떴지 않습니까? 그런 동영상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왜 폭력행위에 대해서 바로 조치 안 합니까?

행정대집행법에 사람 못 건드리게 돼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청장님 그것은 아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관련 법령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위원님이……

○조원진 위원 아니, 그것은 아시잖아요. 행정대 집행에는 사람을 못 건드리게 돼 있다고. 영장 제시도 안 하고, 영장 제시해야 되잖아요. 영장 제시도 안 하고 안에 200명이 있는데 3500명이 붙어 가지고 저런 식으로 폭력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헌법에 보장된, 헌법 8조 1항에 보장된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께 이것 현장 자료 더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국민들 250만이 이 현장을 보고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수사 의뢰할 테니까 수사하십시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영우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홍익표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추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추정안 심사에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강창일	권미혁	권은희	김민기
김성태	김영우	김영호	김한정
박완수	소병훈	안상수	윤재옥
이언주	이재정	이진복	이채익
전혜숙	정인화	조원진	홍익표

○청가 위원(1인)

김병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전문위원	정성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청장	민갑룡

소 방 청 장 정 문 호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유민봉	김성태	자유한국당	2019. 7. 9.

○의안 회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9. 6. 24. 윤재옥·추경호·홍문표·이채익·안상수·강석진·김정재·김무성·박명재·곽대훈 의원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24. 최인호·윤준호·안호영·조응천·이상헌·전재수·도종환·박재호·이학영·정세균·김태년·강훈식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24. 최인호·이상헌·정세균·윤준호·김태년·이학영·도종환·안호영·강훈식·전재수·박재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5일 회부됨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9. 6. 25. 이찬열·전혜숙·김철민·윤후덕·윤호중·김종희·황주홍·이동섭·김진표·권은희 의원 발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9. 6. 25. 박인숙·윤재옥·정진석·이종구·이종배·김현아·김무성·이명수·송희경·신상진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9. 6. 25. 박선숙·정동영·인재근·채이배·정인화·여영국·안규백·고용진·박지원·김관영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9. 6. 25. 김관영·김삼화·이동섭·원혜영·박주선·주승용·박선숙·채이배·전혜숙·최도자 의원 발의)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9. 6. 25. 이주영·김성찬·권성동·송희경·박덕흠·여상규·김규환·김선동·윤한홍·



박완수 의원 발의)

이상 5건 6월 26일 회부됨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6. 26. 정동영 · 장정숙 · 김광수 · 박주현 · 정인화 · 황주홍 · 박지원 · 장병완 · 김종희 · 윤영일 · 이용주 · 최경환(평) · 천정배 · 조배숙 · 유성엽 의원 발의)

6월 27일 회부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6. 27. 인재근 · 소병훈 · 우원식 · 김영진 · 김상희 · 송갑석 · 이규희 · 기동민 · 오영훈 · 박선숙 · 이재정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6. 27. 인재근 · 소병훈 · 우원식 · 김영진 · 김상희 · 송갑석 · 이규희 · 기동민 · 오영훈 · 박선숙 · 이재정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6. 27. 인재근 · 소병훈 · 우원식 · 김영진 · 김상희 · 송갑석 · 이규희 · 기동민 · 오영훈 · 박선숙 · 이재정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6. 27. 인재근 · 소병훈 · 우원식 · 김영진 · 김상희 · 송갑석 · 이규희 · 기동민 · 오영훈 · 박선숙 · 이재정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9. 6. 27. 김태년 · 최인호 · 조승래 · 정재호 · 김영호 · 이용득 · 이학영 · 김철민 · 최재성 · 최운열 · 이후삼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9. 6. 27. 이정미 · 김종대 ·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여영국 · 김광수 · 송옥주 · 이용득 · 유승희 · 이상돈 · 박선숙 · 이철희 · 김종훈 · 손금주 · 최경환(평) · 김종희 · 장정숙 · 이용주 · 이용호 · 심재권 · 맹성규 · 원혜영 · 오영훈 · 서형수 · 김현권 · 정유섭 · 이상현 · 박지원 · 신창현 · 안민석 · 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6건 6월 28일 회부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김영호 · 김현권 · 송옥주 · 김태년 · 김종민 · 송갑석 · 신창현 · 기동민 · 인재근 · 이찬열 의원 발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이규희 · 안호영 · 윤일규 · 송갑석 · 김상희 · 신창현 · 강훈식 · 윤후덕 · 김영춘 · 정춘숙 의원 발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이석현 · 김병기 · 정세균 · 이재정 · 심재권 · 최재성 · 조승래 · 신창현 · 송갑석 · 송기현 · 유승희 · 신동근 · 윤일규 · 원혜영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함진규 · 송석준 · 박덕흠 · 김종석 · 신보라 · 정유섭 · 김성원 · 주광덕 · 성일종 · 송희경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박완수 · 강길부 · 주호영 · 추경호 · 윤영석 · 김도읍 · 김성원 · 김영우 · 조훈현 · 김성찬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19. 6. 28. 정부 제출)

이상 9건 7월 1일 회부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강창일 · 유승희 · 송갑석 · 소병훈 · 홍익표 · 원혜영 · 인재근 · 송영길 · 정동영 · 이종걸 의원 발의)

7월 2일 회부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정우택 · 원유철 · 이종배 · 박맹우 · 윤영석 · 이철규 · 문진국 · 이진복 · 김한표 · 박인숙 · 윤종필 의원 발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김정우·김두관·김성수·김정호·박홍근·박정·신용현·원혜영·윤관석·임종성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홍익표·소병훈·권미혁·송갑석·이재정·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부겸·김영호·김한정 의원 발의)

이상 7건 7월 3일 회부됨

**3·10 태극기향쟁 참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조원진·홍문종·박대출·윤상직·서청원·이주영·김진태·김규환·박덕흠·김태흠·정종섭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최재성·김경협·박완주·신창현·정재호·이석현·박찬대·조승래·김영호·맹성규·제윤경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최재성·김해영·김경협·백혜련·서영교·박완주·신창현·김민기·정재호·맹성규·제윤경·김태년·김병기·이석현·박찬대·송갑석·조승래 의원 발의)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최재성·신창현·정재호·제윤경·김병기·서삼석·윤준호·김병관·김상희·김영춘 의원 발의)

이상 4건 7월 4일 회부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이재정·기동민·김민기·남인순·박홍근·백혜련·송갑석·오영훈·이석현·홍익표 의원 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김병관·이종걸·송갑석·우원식·이원욱·김정우·권미혁·김현권·홍익표·박재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5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6. 21. 안민석·김철민·오영훈·이동섭·이후삼·윤영일·이상현·전현희·이찬열·김병욱·김영주 의원 발의)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6. 21. 안민석·김철민·고용진·오영훈·이동섭·이후삼·윤영일·이상현·전현희·이수혁·이찬열·김병욱·김영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24. 최인호·이상현·정세균·윤준호·김태년·이학영·도종환·안호영·강훈식·전재수·조웅천·박재호 의원 발의)

6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9. 6. 25. 경대수·최연혜·박덕흠·김기선·김성찬·이종명·황주홍·김재원·김종희·김현아 의원 발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6. 25. 서삼석·김현권·김병기·전현희·이규희·위성곤·신창현·김정호·윤일규·유동수·맹성규·김철민·박정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  
 부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9. 6. 26. 신보라·추경호·원유철·윤종필·곽대훈·김선동·이현재·정양석·이은권·문진국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 6. 26. 김철민·김영진·김정우·위성곤·신동근·안호영·서삼석·박홍근·송옥주·신창현·김현권·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  
 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  
 부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6. 27. 신창현·기동민·김영춘·송갑석·이수혁·신동근·서영교·이석현·윤준호·김철민·노웅래 의원 발의)  
 6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박완수·주호영·김성원·추경호·김승희·김성찬·윤영석·김영우·조훈현·이찬열 의원 발의)  
 7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김철민·송기현·윤관석·신창현·위성곤·김정우·전재수·서삼석·윤영일·이찬열 의원 발의)  
 7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김성원·김명연·김영우·김정재·박덕흠·박인숙·안상수·염동열·이만희·이은권·정유섭·함진규 의원 발의)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이명수·김성원·유민봉·김명연·박덕흠·윤종필·박명재·김성찬·성일중·홍문표·김승희·김선동·이은권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  
 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  
 부됨